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핵심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인사교류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의 가산금을 인상하고 인사교류 직위 중 중요성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교류 직위에 임용되는 사람에게는 추가 가산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2. 14. ~ 2.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3호라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산금

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소속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중앙행정기관과 교육·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교류임용되는 사람에게는 월 6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3)의 해당자 중 인사교류 직위의 중요성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교류 직위에 임용되는 사람에게는 아래의 지급 상한액 범위에서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한다.

계급·직무등급	월 지급 상한액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9등급(과장급은 제외한다)부터 12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600,000원
3급, 9등급 외무공무원(과장급으로 한정한다), 일반임기제 3호	400,000원
4급,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일반임기제 4호, 총경, 소방정	300,000원
5급 이하, 5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	150,000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1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연 락 처	(044) 201 - 8397